

## IV. 좀 웃으면서 삽시다.

崔 炳 俊 / 前 청주문화원장

웃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진장의 재산이다. 돈은 나누어 주고 싶어도 없을 때가 있다. 그러나 웃음은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무진장으로 남아 있게 마련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사회정화추진위원회는 건전한 사회기강 조성보다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하여 오늘을 움직이는 지성인들의 새로운 삶의 지표가 될수 있는 주목같은 글들을 모아 씨리-즈로 게재 하고 있다. 자료제공 : 사회정화위원회

한국인들은 웃음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것 같다.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을 유교문화권에서 살면서 희로애락을 그 얼굴에 나타내지 않는 사람을 군자라고 생각하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그대로 표현하면서 살고 있는 서구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보면 무표정한테 놀라리라고 생각한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무표정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지리적으로 볼 때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 자체도 신라 백제 고구려 조선왕조를 거치면서 무표정한 성격을 형성한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보기도 한다.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든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반세기동안 신음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해방은 왔지만 현실은 38선으로 국토가 양단되고 그것으로 연유해서 많은 비극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많은 비극 중의 가장 큰 비극은 6·25라는 이름의 우리민족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것이었다. 전국토가 초토화되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헤아릴 수 없는 난민들과 전쟁고아 미망인들이 생겨났었다.

이러한 환경가운데서 수백년을 살아온 것이 한국인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는다는 것,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민족의 사정은 우리의 인사말 가운데 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다.

「평안하십니까」「안녕하세요」「별고나 없으십니까」 이러한 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평안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사와 똑같은 인사말을 쓰는 나라는 이스라엘인데, 그들은 모든 인사를 「샬롬(평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데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지정학적 배경이 우리나라와 흡사하다는 점은 흥미있는 일이다.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굿 모닝」과 「굿 이브닝」을 아침과 저녁인사로 하는 그들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구미인들의 사회적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얼굴에 웃음을 띠게 만들고 그들의 표정을 밝게 만들어 하루하루의 삶을 즐겁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한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저 답답하고 우울하고 기막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있는 심정이 되지 않는 것을 탓할 수도 없다.

버스를 타고 차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볼 때, 모두가 무표정하고 걱정과 근심에 싸인 것 같고 번화가를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아도 웃음을 띤 명랑한 사람은 별로 없을 정도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좀더 밝고 명랑한 세계로 만드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웃고 있는 명랑한 얼굴을 보면 나 스스로도 기분이 좋고 명랑해지며 그와 반대로 찡그리고 있는 인상을 보면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공연히 기분이 좋지 못할 때가 있다.

미국에서 길을 가다 보면 앞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고 반갑다는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흔히 대한다.

처음에는 내 뒤에 그가 아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웃고 인사를 하는 것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지만 그의 웃음의 인사는 처음 보는 외국인에 대한 것이었음을 알고 좋은 인상과 함께 마음도 유쾌해진다.

웃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진장의 재산이다. 돈

은 나누어 주려면 없을 때가 있다. 그러나 웃음은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무진장으로 남아 있게 마련이다.

86년과 88년에 올림픽이라는 어마어마한 국제적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치르게 되고 수많은 외국손님들이 밀려오게 되는데 그 외국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 얼굴에 웃음을 띠는 것이다.

<정화추진위원회 제공>

## “요양취급기관 변동사항은 즉시 신고합시다”

(요양취급기관 종사자용)

###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은 공·교의료보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개설되면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신청시에 제출한 현황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요양취급기관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신고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의 유발되고 해당 요양취급기관 역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지정서 반납

##### ○반납사유

- 요양취급기관이 폐업한 때
- 요양취급기관이 지정서에 명시된 진료지역 이외의 장소로 소재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폐업한 때
- 비법인(개인설립)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된 때
- 요양취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때
- 요양취급기관이 타법령(의료법 등)에 의거 업무정지 또는 폐쇄 처분을 받은 때

##### ○제출서류

- 요양취급기관의 지정서 반납 보고서 1부
- 지정서
- 보건소 발행 폐업사실 확인서 사본 1부

##### ○제출처 및 방법: 공단본부(급여부)

○제출기한: 지정서 반납 사유가 발생한 즉시

#### 2. 변경사항 신고

##### ○신고사유

- 요양취급기관 지정신청시 제출한 요양취급기

관 현황신고서의 기재 내용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 ○제출서류

- 소재지, 대표자(법인의 경우)변경시

• 요양취급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1부

•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및 약국 폐업 등 사실확인서 사본 1부

• 지정서

- 명칭변경시

• 요양취급기관 변경사항신고서 1부

•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 지정서

- 금융기관·계좌번호·예금주 변경시

• 요양취급기관 변경사항신고서 1부

• 요양취급기관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를 생략

• 병원급이상 요양취급기관에서 병 원장 직인 날인

• 거래 금융기관에서 계좌변경(온-라인) 통보가 있을 경우

- 요양취급기관의 주요의료장비

• 요양취급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검사시설 설치 운영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 고용시)

○제출처 및 방법: 요양취급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지부

○제출기한: 변경사항 발생 즉시